

NSL. 1.72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창립대회

때 : 1998년 9월 2일(수) 저녁 6시
곳 : 서울 명동 향린교회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02)778-4001 F. 778-4006 민권양심(나우)

인권정보자료실
NSL1.72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창립대회

**때 : 1998년 9월 2일(수) 저녁 6시
곳 : 서울 명동 향린교회**

민중의기본권보장과양심수석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140-150)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02)778-4001 F.778-4006 민권양심(나우)

목 차

축 시	이기형	3
식 순		7
회 칙(안)		8
창립선언문		10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홍근수	13
우리는 왜 준법서약을 거부하는가 1	양심수	23
우리는 왜 준법서약을 거부하는가 2	양심수	26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 쓰는 이유	강용주	30
한총련 수배자 아버지의 편지	김종맹	33
범민련 의장단 구속 규탄 성명서	범민련	35
범민련 의장단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변경수	36
시대의 양심 문규현 신부를 석방하라	평통사	41
문규현 신부 구속 사건에 대한 입장	종교단체	42
정치수배, 해제돼야 하는 3가지 이유	수배자 농성단	44

<축시>

기본권·자주권 회복과 남북통일

-양심수 석방 대책위에서-

이기형 시인

1998년 8월 15일

해방 53년이자 분단 53년이요
대한민국 수립 50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선언했다
이 '제2의 건국'이라는 거창한 캐치플레이즈에 걸맞은 첫째 조치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첫째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국 교도소 철문을 활짝 열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일이어야 한다
요샛말로 하면
모든 장기수 양심수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풀어주는 일이다
그러면 남쪽 4천만 국민은 아니 남북 7천만 국민은
해방과 자유의 환희에 들끓을 것이다
남쪽 산하는 아니 남북 조국산하는

얼씨구절씨구, 우줄우줄, 으쓱으쓱, 덩실덩실 춤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도
국민의 정부의 인기도 충천할 것이다.
저는 지금 53년전 1945년 8.15해방 다음날인 8월 16일 11시경
서대문형무소 철문 앞 역사적 광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환영 나온 많은 사람들이 초롱을 들고 있었다
촛불을 켠 등도 있었고 안 켠 등도 있었다
'김삼룡동지 환영'이라고 쓴 초롱의 글자는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36년간 잡겼던 옥문이 열리자

맨 앞에 여운형 선생과 보호관찰소장 장기(나가사끼)가 탄 차가 나왔다
뒤이어 얼굴이 하얗고 뼈만 남은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반일독립투사들이 쓸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구가 얼싸안고 뺨을 비비고 눈물짓던 그 역사적 환희와 감격의 순간!
연도의 보는 사람도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53년전 그날 그순간의 광경이 지금도 환히 눈앞에 서물거린다
그날의 해방, 자유, 감격의 높이는
백두산 높이를 능가하고도 남으리라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던 지난 해 12월 19일 아침
일산 자택 문전에 선 김대중 당선자의 TV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53년전 서대문형무소 문전 광경이
53년이 지난 오늘
남한 각 교도소 문전에서도 재연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현데, 지난 3·13에도 이번 8·15에도
그 꿈의 기대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사실, 지난 3·13에 장기수 양심수를 모조리 풀어줬다면
남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IMF도 쉽게 풀렸을 것이다
분단을 푸는 방법이나
IMF난국을 푸는 방법은
둘 다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역대 정권의 외세 의존 때문에
분단은 53년간 지속되었다
역대 정권의 예속 경제 때문에
IMF난국은 초래되었다
그렇다면, 50년만에 정권교체된 김대중 정권은
의당, 역대 정권과 백팔십도 전환된 다른 정책을 펴야 할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여전 철폐하지 않는다
이 악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본뜬 것으로
반통일, 반북, 반민주주의, 반인성 악법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 타락, 허위, 사치, 낭비, 사기, 폭력, 살인, 성폭행, 패륜, 비
풀어진 의식구조 등은

이 악법이 낳은 고름바다 현상이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2·12, 5·18 헌정파괴자 전원을 풀어주는 마당에
장기수 양심수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천부당 만부당이다
전향서 대신 준법서약서라니
그들은 진작 애국자요 통일일꾼인데
뭘 전향하란 말인가
준법서약이라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데
옛 성현도 악법은 지키지 말라고 했거늘
뭔 서약을 강요하느냐
양심의 자유는 신성 불가침이 아닌가
이번 8·15에 전체 양심수 455명 중 준법서약한 94명만을 풀어주었다
그나마 형집행정지, 가석방, 감형일 뿐 완전 사면은 아니다
더구나 30년 40년 장기수 17명과
범민련 인사와 한총련 학생과 많은 보안사범은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차가운 저승방에 그대로 남겨 놓았다
장기수 17명은 현대사 비극의 용어리결정이다
이 용어리를 풀지 않고는 만사허사다
한술 더 떠, 이번 8·15에도 범민련 지도부를 몽땅 잡아가고
한총련 학생 수백 명을 구속 수배했다
이렇게 하면 통일도 안되고 민주화도 안되고 IMF국난도 안 풀린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6개월간 치적을 되돌아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IMF국난 해결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북 경협, 남북 통일로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요구 순종 일변도로 풀려고 한다
저들은 우리국민이야 죽든 말든 비싼 이자만 또박또박 받아 먹고
본전을 떼이지 않을 요량으로 감언이설과 강요를 들이대지 않는가
저들의 요구대로만 해서
4백만 실업자와 이반하는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정 급하면 모라토리움이라도 선언하면 어떨까

당국자와 국민은 일치단결 단군열로 돌아갈 때
 IMF국난은 뚫린다
 예나 지금이나
 국정에서 인사 배치는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의 요직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저렇게도 낡고 때묻은 인사뿐인가고
 놀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도 새술은 새푸대에 담으라고 했다
 현재의 진용으로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언론개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새정치국민회의 안에도 진취적이요 유능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IMF국난 타개를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겨레와 역사는 새 제도 새 일꾼을 목놓아 부른다

후광을 진심으로 아끼는 오늘 이 자리 모든 인사들의 이름으로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단군 할아버지와 반일 독립선열은
 항상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우리들은 일거수 일투족 일언반구인들
 소홀히 할 수 없다
 겨레와 역사 앞에 멋떳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견인은
 미국이나 수구세력이 아니다
 4천만 국민이다
 4천만 국민이 건재하는 한
 김대통령의 위치는 확고부동 반석이다
 어떠한 색깔론도 어떠한 모략도 분쇄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기해 국민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미군을 모셔 보내고 국가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범민련과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장기수와 양심수를 모조리 당장 풀어줘야 한다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고 통일광장으로 건너가 보라
 전국민을 남북통일 광장으로 이끌어 달라
 전국민은 오직 남북통일 한 길로 용왕매진할 뿐이다

식 순

사회 김규철(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사)

개회사	홍근수 발기인 대표
민중의례	
내외빈 소개	
축시	이기형 시인
축가	천리마 노래단
격려사	
경과보고	
임시의장 선출	
회칙(안) 심의	
임원 선출	
창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폐회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 칙(안)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회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 한다.

제 2조 이 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 3조(목적) 이 회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자유로운 민간통일 운동 보장운동
- 2) 모든 양심수 석방 운동
- 3) 모든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운동
- 4) 국가보안법 철폐와 준법서약제 철회 운동
- 5) 기타 인권보호 운동

제5조 이 회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운영위원회
- 3) 집행위원회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회원은 이 회의 목적,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내고 이 회의 규정과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조직

제8조(총회)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상임대표 또는 운영위원 1/3의 요구, 또는 회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연다.
- 2)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4)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 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다.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라.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공동대표로 구성하며, 공동대표가 호선한 상임대표가 주재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괄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목적 사업에 찬동하는 각계 원로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임면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 1)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이 회의 목적 사업을 운영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집행한다.
-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상임대표, 공동대표)

- 1) 상임대표는 이 회를 대표한다.
- 2) 상임대표, 공동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임대표 유고시에는 공동대표들이 호선한 1인이 다음 총회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이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3) 감사는 이 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고, 각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3조(재정)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특별성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및 준용

제14조(개정) 회칙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7장 부칙

제16조(시행인)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창립선언문

우리는 애국선배열사들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오늘 이 땅에서 민권을 짓밟아온 독재정권의 낡은 유산을 척결하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를 모아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창립을 선언한다.

민중은 국제통화기금협약에 따라 경제주권마저 외세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 기부의 '북풍공작'에 흔들리지 않고 '선거혁명'으로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해 구체제를 청산하고 총체적 민주개혁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최근 8.15 양심수 석방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대다수 양심수들을 배제하고, 9차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문규현 신부, 한총련 청년학생들을 구속하는 등 민중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 독재정권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 정권이 선언한 '제2건국'은 행동하는 양심이 더 이상 탄압받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양심수가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거짓이다. 김대중 정부는 인권 탄압의 역사를 청산하고 양심수 없는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양심수 전원석방과 함께 양심수를 양산해온 낡은 정치적 관행과 악법, 기구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교체의 참뜻을 살려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천할 것을 '국민의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강령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담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합의서 실천 공약에도 어긋난다. 과거 독재정권이 '범민련과 한총련 죽이기'에 나섰다면 새 정권은 이를 조국통일운동단체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들의 이적단체 규정을 풀지 않고

자유로운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하지 않으면 양심수 양산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민간통일운동에 앞장서다 구속된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의장단과 문규현 신부, 한총련 청년학생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 사면복권해야 한다. 내란 반란 수괴죄로 단죄한 전두환 노태우마저도 석방과 동시에 사면 복권해주면서 분단체제와 독재정권의 피해자들인 양심수를 감옥에 그대로 두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양심이 갇히는 사회는 민주사회로 될 수 없다. 양심수는 무조건 전원 석방되어야 한다. 양심수가 단 한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 사회 전체가 양심을 억압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셋째,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이들 또한 독재정권의 피해자들이다. 김영삼 문민독재시절 학생운동 관련자 56명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수배자들의 구제가 새 정부 들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출범 때 전면적인 수배해제 조치를 내린 것과 대조된다.

넷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준법서약제를 철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 이념에 반하는 위헌무효 법률로서 즉각 철폐돼야 한다. 이것이 남아 있는 한 자유로운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할 수 없고 문규현 신부의 구속에서 보듯이 사제의 양심까지도 짓밟힐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양심수 전원 석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양심수 양산을 막을 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 중의 악법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준법서약제는 사상전향제의 변종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 과거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를 연장하고 민족민주진영을 고립 분열시키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수에게 폐기되어야 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양심에 대한 고문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

다섯째, 민중의 생존권 운동과 노동자의 진보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아래 고통받는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제에 맞선 단병호 금속노련 위원장과 유덕상 한국통신노조 전위원장 등 노동운동 대표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철회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들어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 또는 수배된 노동자들이 지난 김영삼정권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제주권 상실 등 국난을 불러온 독재정권과 독점재벌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지 않고, 이렇게 구제금융사태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한 대선 공약대로 진보민청에 대한 이적 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울산 '영남위원회사건'은 정리해고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김창현 민선 동구청장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용공조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용공조작을 통한 공안통치는 사라져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공안통치와 양심수를 불모로 명맥을 유지한 과거 독재정권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말아야 한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은 정권이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묻기에 앞서 민주사회의 기본적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새 정부는 공약한 대로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김대중정권의 '제2건국'은 온 민족의 살길인 조국통일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범민련과 한총련 구속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함으로써 범민련 통일애국인사들과 한총련 애국청년학생들의 조국통일 열정과 헌신을 국난 극복과 제2건국의 동력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민중의 염원에 따라 김대중 정권이 새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민족 양심의 소리를 모아 김대중 정권이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심수를 전원석방하며 진정한 민주개혁과 조국통일의 길을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998년 9월 2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고자료 1>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 과감한 통일정책을 실시하라¹⁾

홍근수/향린교회담임목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우리가 끊다 이룬 꿈

우리는 지금부터 꼭 50년 전에 단독정부의 수립과 민족분단의 기정사실화를 의미하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와 정부로 자처한 남쪽의 대한민국 건국은 미·소의 대립과 소련이 뒤를 바치고 있는 공산세력의 북한지배라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었다. 이는 뒤이어 북쪽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건설의 구실과 합리화를 해준 셈이 되었고 이로써 민족분단이 '완성'되고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남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단독정부를 수립한다고 했고 민주공화국 헌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뿐 실상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문민독재였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국시와 함께 북진통일, 승공통일, 멸공통일 정책을 내세운 매우 호전적인 반공정권이었다. 또한 동·서냉전체제에서 미국측에 편입되었던 그 정권은 그 존재의 근거와 기반을 북쪽의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을 적대, 이와 대립하는 반공에다 두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이라 약칭함. 처음에는 반공법이었다)이란 것이 그러한 배경에서 생겼다. 그때이래 반세기가 넘는 오늘에 이르는 동안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가 종언을 고한 지 오래 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보법은 여전히 존속하면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

13년동안 계속되었던 이승만 독재정권은 1960년 4월에 4·19혁명에 의해 붕괴되었다. 그리고 잠시 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동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집권하였으나 그 다음해 5월에 박정희·김종필 군사 쿠데타에 의해 붕괴되고 그때로부터 장장 30여년간 계속된 군사독재체제 시대가 계속되었다. 역대 군사독재정권 역시 반공에다 그 존립의 근거와 기반을 두면서 한편으로 민주화를 유보하고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악랄하게 억압, 탄압하였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6년 전인 1992년에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였다. 기존 군사독재정권의 자궁 안에서 출생한 사이비 문민정권이었다. 이것은 하필 그 정치적 족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국보법이란 악법을 그대로 존치했었고 그에 의해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 내었으며 반통일·반북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1. 이 자료는 홍근수 목사가 지난 8월 7(금) 순천대학교에서 행한 강연 원고를 정리한 것임.

그리고 지난 2월에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평생 색깔론의 피해자로서 박해를 받은 인물이고 사형수였기도 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가 대통령 당선 전에도, 또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명백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생명의 은인인 미국에 대해 지금까지 통치자가 보인 것을 능가하는 ‘절대적 충성’을 보이는 것 같다. 그것은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그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그는 통일되면 당연히 철수한다는 종전 정권의 입장을 과감히 뒤집어 통일 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국가보안법에 관하여는 ‘민주수호법’으로 대체한다고 했으나 이에 상응된 법이 북한에 있다(사실인지?)는 이유로 그 철폐를 거부하고 다만 그 법에 있는 독소조항을 조금 수정하고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후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대통령 취임 반년을 지나게 된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는 그는 신기하게도 통일정책 대신에 대북 정책만 내놓고 있다. 대통령 취임에 제하여 종전 정권 때에 비해 너무나 실망스러운 적은 양심수를 석방한 그는 이번 8월에 양심수를 대량 사면, 석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과거의 사상전향제를 폐지한다고 한 것은 환영을 받았으나 엉뚱하게 그 대신 “준법서약각서”를 내놓아 양심수 대량석방 계획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역대 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문제의 ‘현주소’이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민족통일을 외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해 오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해왔지만 민족통일은커녕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통탄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과 민족통일과 민주화의 전망

우리는 6년 전에 소위 문민정권이 출범할 때 민족화와 통일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지고 6년이란 세월만 허송했다는 비통감만 남았다. 이러한 가운데 ‘준비된 대통령,’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봄에 출범하였다. 그의 대통령 취임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보게 된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정과 민주주의를 군사 쿠데타로 뒤엎은 장본인인 김종필씨가 이끄는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으로 출범하였고 우리 정치사상 반민주의 상징인 그를 초대국무총리로, 반통일의 상징적 존재인 강인덕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그의 정권이 본질적으로 반민주, 반통일 정권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정권은 그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초기부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라고 특징 지을 만한 기록을 남겼고 반통일적이라고 할만한 ‘행적’을 쌓고 있다.

이 정권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가장 민족통일에 대한 조예도 깊고 열정도 있다고 본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이건만 반통일의 상징적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통일정책 대신 대북 정책을 들고 나왔으며 통일보다 평화적 분단 관리를 공공연하게 천명

하였고 안보에 역점을 둔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이비 문민정부 출범직후에 이인모 노인을 북송한 것에 벼금가는 일을 한다는 듯이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이끄는 소떼 500마리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8·15통일대축전에 대한 북의 제안을 받아드렸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남북간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범민련·한총련 등에 대한 종전 정권에 의한 이적단체 규정을 이유로 이번 ‘8·15 통일대축전에 범민련과 한총련은 참가를 불허한다는 선언으로 아 통일대축전이 불발탄이 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국보법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치와 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악법이다.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사랑, 인정, 인도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등은 물론 민족화해, 평화 통일 등 거의 모든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인도적, 반도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민족적, 반문명적... 등의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런데 김 대통령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김 대통령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도, 정치철학과도 양립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준으로도 명백히 악법으로 판정된 법이다. 정치인들이, 법조인들이, 학자들이, 재야 지도자들이, 성직자들, 이 법의 피해자들 등 거의 모든 사회부문의 지도자들이 악법이라고 단정한 국보법, 그것을 철폐 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는 형편이니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 국보법은 사실은 ‘국망법’이고 ‘국말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망법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법’ 또는 ‘국가를 망신시키는 법’이란 말의 준말이고, 국말법이란 ‘국가를 말아먹는 법’이란 말의 준말이다. 정말 그렇다. 왜냐하면 이 국보법은 우리 사회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고 사상과 학문과 예술 등의 자유를 막아 사상, 학문, 예술 등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식하기도 했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감옥에 갔다가 매우 놀랐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감옥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중미술연구회 같은 단체에 속한 화가들이 좌경, 용공으로 잡혀 와 있었다. 오직 놀랄 따름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이란 것에 대하여 고 문익환 목사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분노한 일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족화를 요구하고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 영달 같은 것은 초개처럼 생각하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잡아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법이었어요!... 이 국가 보안법이라는 것, 정부를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하는 법입니다. 한 입으로는 북괴! 또 한 입으로는 민족공동체!...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의 근원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²⁾

과연 그렇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국보법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보법이다. 이 법은 통일운동하는 사람을

2. 문익환, 『나는 왜 평양에 갔나』, 23-24.

거의 모두 감옥을 갔다오게 만들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은 그래도 세계가 동서냉전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여서 국보법을 우기는 측이 논리적으로는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국보법의 존재 근거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동서냉전이고 다른 하나는 반공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없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동서냉전시대가 아니다. 냉전이 지나고 탈냉전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만이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 무섭던 반공 이데올로기도 이제 힘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반공을 가지고 외교와 경제교역의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공산 중국과 수교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경수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이제 공산 북한과 수교의 길을 떴다.

이제 국보법의 존립 근거가 완전히 와해되고 붕괴되었으며 원인무효화되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냉전이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려고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세계인들에게 우리를 아주 야만민족같이 보이게 하는 부끄러운 법이다.

이 정권은 종전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감옥에 있거나 수배당하고 있는 정치범, 양심수를 석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정치범,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는 정권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종전 정권이 투옥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양심수를 감옥에 투옥했다는 믿기 어려운 통계가 있다. 즉 김정권 출범이후 단 5개월 동안 구속된 양심수 총수는 모두 23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여 국보법으로 특히 젊은이들을 이적죄, 고무찬양죄, 간첩죄 등의 혐의를 덮어씌워 마구 감옥에 보내고 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김대중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지난봄에 출범한 이 정권은 '괴물' 정권으로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 현실적으로 다른 세력과 연대하고 공동정권을 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으로 과거 반대하고 투쟁했던 역사의 죄인들, 역사의 퇴물들이 되어야 할 과거 불의하고 부패했던 독재정치의 주역들과 그 하수인들을 분별없이 다들 영입하여 지금의 김대중 정권에 가담시키고 세를 불리고 있다. 이렇게 된 현실을 볼 때 과연 정권교체의 의의가 있는지를 다시 묻게 된다. 아무리 정치라지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이나 인도주의를 그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과거 김영삼 정권은 3당야합이고 현재의 김대중 대통령의 공동정권은 연대인가? 오늘의 국민의 정부라는 이 권력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구태의연한 과거 정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이 '국민의 정권'은 지난 반년동안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첫째 이 정권의 기본성격은 반민주-반통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민련이란 정권과의 공동정권이라는 것이다. 설령 김대중 대통령 개인이나 그가 이끄는 정당인 새 정치 국민회의가 민주 지향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동 정권을 이루고 있는 자민련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는 반대하면 어떤 정책을 소신껏 추진, 시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정치가 현실적이어야 한다지만, 적어도 공당이고 정권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

도의 정책과 원칙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보법 같은 것을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든가 양심수를 여전히 가두어놓고 또 새로 만들어 내야 유지되는 그런 정권이라면 그 정권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평가받고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회과학자 가운데 정통성을 설명하기를 권력의 뿌리의 정통성, 권력창출 과정의 정통성, 권력 행사의 정통성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김대중 정권에게 고도의 정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현역 교수인 널리 알려진 학자가 있다. 그러나 그에게 동의할 수 있을까? 이 국민의 정부라는 공동정권은 권력 뿌리를 볼 때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권력 행사의 정통성도 국보법의 철폐를 거부하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거부한다면 한총련과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기를 거부하는 이 정권은 분명히 권력행사의 정통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족통일을 정권의 민족적 정통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때 이 정부는 통일보다 분단 관리 정권으로 자처하는 이 정권은 정통성의 문제가 치명적으로 손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정권은 국내의 도덕적 세력의 기준에서 볼 때는 물론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민주적-인권적 정권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정권은 오늘의 시대에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민주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정권이 반민중적이고 반노동-반농민 정책을 사용할 때 이 법을 이용하는 것 같다. 이 법의 철폐를 거부한다면 종전의 반민주 정권에 의해 투옥되어 있는 양심수의 무조건적 즉각적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든지, 이번 8·15에 양심수 대량 석방을 발표하면서도 '준법서약각서'를 전제적으로 쓸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도 국보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된다. 이 법에 의해 새로이 많은 양심수들이 체포, 투옥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법이 정권안정이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특히 이 정권이 8·15 통일 대축전에 한총련과 범민련 등은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때가 그런 의심을 낳는다.

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과거 군사독재자들도 실시한 개혁이나 사정조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대상들을 개의치 않고 정부 조직 내에, 또는 선거직의 자파 후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의 기본 성격을 다시 의심하게 한다. 정부와 관료조직 사회에서 부정부패 근절은커녕 그것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대담해진 감이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청렴도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이다. 몇 년 전의 독일『디 벨트』지가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의 청렴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41개국 가운데 27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참으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디 벨트』지의 조사 결과가 근거 없는 것이라거나 우리 나라에 대하여 지나친 혹평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실상을 보면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양대의 명예교수인 리영희 교수는 지난봄에 발행된 한 학술잡지에서 우리 사회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묘사하였다: "우리 사회는 부패, 부정, 타락, 범죄, 비인간화가 극에 달한 사회임이 분명하다. 기성세대들의 사회는 거의 구제불능의 '반도덕' 상태이다...나라의 최고통치자(들)에서부터 정직해야 할 국가기관

공무원들, 청렴해야 할 군대, 경찰, 검찰 등의 권력집단들, 자본주의적 규칙은 지켜야 할 자본가, 기업주, 상인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이르는 사회구성원의 밑바닥까지 부패하지 않는 곳이 없고 범죄화하지 않는 곳 없는 사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회인가? 분명히 '병든 사회'이다."³⁾

우리 사회는 아주 중병에 들었다는 리영희 교수의 진단에 동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들어야 할 것은 하위권에 들고 하위권에 들어도 괜찮을 것은 상위권에 들고 있는 설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면에서 세계에서 122등이라고 한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1등, 교통체증이 세계에서 1등, 미국의 무기구입 고객 중 제1등이라는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운동에서도 권투나 사격이나 활이나 골프에 1등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것을 국가적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군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대국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그것은 평화애호국으로는 우리나라가 끌찌일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정작 개혁해야 할 것을 개혁하지 않을 때, 참으로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투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로 남을 수밖에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청소년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염려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치인들과 정권과 정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리영희 교수는 같은 글에서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 있다:

"...기성세대와 어른들이 닥치는 대로 속이고, 훔치고, 뺏고, 살인해서 토막을 내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에게 질세라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생매장해 버린다."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최근에 어느 신문사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사회조사 결과로서 이 나라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청소년들을 비난하거나 통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른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뿐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자가당착과 모순투성이의 정권이다. 민주와 통일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그리고 새 정권에 대한 기대에 차 있는 북한에 대하여 반민주와 반통일의 대표자이고 반역사적 퇴물로 내버려야 할 인물인 김종필씨를 초대국무총리로, 강인덕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

또 전두환, 노태우씨를 무조건 석방하는데 손을 들어주었다. 보복금지란 이름으로 동서화합이란 이름으로. "이 사건은 ... 소장 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실행된 군사반란사건임이 명백하다"⁴⁾는 검찰의 말에도 불구하고서.

3. 리영희, 통일의 도덕성, 당대비평(1998년 봄호), 138-39

4. 『12.12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문』, 24쪽.

물론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해도, 심지어는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범인도 사면, 석방할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그가 전두환·노태우씨 같은 국가대역죄를 범하고 자국민을 대량 학살한 역사적 중죄인들에게는 쿠데타나 반란 재시도 금지 각서 같은 것은 물론 준법서약각서에 따위는 제기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유독 양심수들에게만 준법서약각서를 석방의 전제로 삼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국민을 자극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학살당한 국민과 그 가족들인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학살한 원흉이고 역사와 민족의 죄인인 전·노 등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그들을 전직 대통령으로 환대하는 일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있다.

만일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범죄자이고 그들의 집권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면 그들 불법적 정권이 불법적으로 만든 정치수들, 양심수들은 마땅히 무죄로 석방되어야 하고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인데도 이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아직도 감옥에 두고 있다. 그리고 전·노가 한 것과 꼭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처사들이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유엔 헌장과 인권선언 등을 지켜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 유엔 회원국에게는 유엔헌장이나 인권선언이나 인권규약 등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반 국제법들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한국 인권관련 권리안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끄럽게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유엔이 우리의 노동 현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당한 노동정책과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 나라의 법관들은 국보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억지를 쓰면서 검사는 의로운 민주인사들, 민족의 지도자들, 통일운동가들, 그리고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하고 기소하고 판사는 검사의 주문대로 이들을 유죄판결하고 감옥에 보내고 있다. 법관들은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을 말하고 있다.

악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복종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국민의 정부라는 이 정권은 기존 악법들을 개폐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인데도 우이득 경이고 마이동풍이다. 그 대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 나라의 노동자들의 운명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유엔회원국으로서 또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그 규약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 또 만일 그렇다면 그 조약들에 위배되고 저촉되는 법은 진정한 법이기도 어렵고 악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 지금 그런 악법이 많다.

악법은 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법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다 법이 아니다. 국보법은 그런 것도 갖추지 못했다. 법은 정의로울 때에만 정당하고 타당한 법이다. 만일 그 법이 정의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이 될 수 없다. 법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하고 비폭력으로 흑인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실정법을 어겼다하여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40여 년 전의 일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실정법을 어길 수 있느냐는 비난을 들은 킹 목사는 베밍햄 감옥으로부터 “나의 동료 목사들에게”라는 유명한 편지를 써 내보냈다. 그 편지에서 킹 목사는 법에는 정의로운 법과 불의한 법이 있다고 말한 후 불의한 법에는 복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의 두 가지 유형의 법률이 있습니다....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정당한 법률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당한 법률에 복종해야 할 합법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당한 법률에 복종할 도의적 책임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자요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역시 일찍이 “부당한 법률은 전혀 법률이 아니다.”라고 언명한 바 있다. 그는 “정당한 법률은 도덕적 법과 하느님의 법과 일치하는 인간의 법”이고 “부당한 법은 도덕법과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이다”라고 정의했다. 기독교에서는 법의 형식을 갖춘 것은 무엇이나 다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정의를 부정하고 정의에 반하고 정의를 파괴하는 법은 법이 아니고 인간성을 해치고 비인간화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간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법은 어느 것이나 정당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격을 타락시키는 법은 모두가 부당한 법이다.” “법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불의는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 가는 문』이란 유명한 작품을 쓴 17세기의 존 번연 역시 불의한 법은 끝까지 반대한다는 불타협의 입장을 취했다: “내가 나의 양심을 도살장으로 만들기 전에는 내 생의 마지막까지 감옥에 머물겠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의 남아프리카의 한 인권운동가인 목사, 알렌 보삭 목사에 의해 견지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흑인차별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반역이라면, 반역이라고 불려라.”

오늘 인권과 정의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 자기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국민의 정부로 권력이 교체된 지금, 그 정권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인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고 양심수들이 450 여명이 넘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볼 때 과연 이 정권은 어떤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양심수가 교도소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아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고 우리의 정치현실은 물론 우리 국민의 삶은 인도주의나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심수라고 불리는 죄수 아닌 ‘죄수’가 이 땅의 교도소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법적인 군인정치가 저질렀던 모든 불의와 악을 청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일하던 이 땅의 양심적인 민족의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을 투옥한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폭력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라고 말하려면 민주인사-통일인사부터 석방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이

양심수들은 이 땅에서 약자들의 생존권과 탄압 받는 동포들의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양심수들이란 민주공화국에서 삶을 누리는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고 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요 어떤 정치권력이나 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양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 죄가 된다고 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무릇 어느 정권이라도 이러한 반민주적 질서를 바로 잡기 전에는 민주정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염중히 경고한다. 그러므로 장기수들을 포함하여 양심수들을 무조건, 즉각, 전원 석방하여야 하고 수배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수배해제하여 광명한 하늘 아래에서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미결중인 모든 양심수들 역시 즉시 기소가 중단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 그 때까지 누가 뭐래도 이 땅에 민주화가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그 때까지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숭고한 투쟁은 잠시도 멈출 수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이제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권면한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⁵⁾는 성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깨닫기 바란다. 이 말씀은 통치자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어떤 법이 선량한 시민에게 두려움이 될 때 그 정권은 불의하고 악하며, 그 법은 악법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모든 정권은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정권은 악하고 불의한 정권이고 하느님께서 심판할 정권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양심수를 감옥에 가둬두는 정권, 악법을 실정법이라고 우기는 정권은 하느님으로부터 승인받을 정권으로서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몰수당할 수 있는 정권이라는 것이 성서적 사상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서와 우리의 신앙에 근거하여 볼 때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불의한 정권만이 국보법 같은 악법 철폐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8.15 때에는 단순히 국경일마다 관례에 따른 사면조치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질서가 시작된 이 땅에서 새 정치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양심수를 전원 사면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진정 화합을 원한다면 전·노 석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그 동안 수배중에 있는 통일인사들과 민주인사들을 전원 즉각 수배해제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며 범민련·한총련에 뒤집어씌운 이적단체 규정을 한시바삐 벗기고 그들을 이 민족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길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 말을 듣고 각성하라.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법, 국보법이라는 이름의 세기적인 악법 중의 악법을 즉각 철폐함이 없이 국민의 정부나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법제정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변하여 존립근

거가 무효화되고 반역사적인 법, 시대의 정신과 양심의 법에 상반되는 법, 도덕과 인도주의의 밝은 빛에서 빛이 바래버린 법, 민족적 상식에 어긋나는 법,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법,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법, 즉 국가보안법, 이 법을 당장 철폐하라! 이런 법의 철폐 없는 민주화나 개혁 등은 새빨간 거짓이고 허구이고 빙 약속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든 양심수들이 전국에 널려 있는 감옥에서 석방될 때까지, 아니 우리들의 뇌리 속에 "양심수"란 어휘를 기억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들의 입에서 "모든 양심수석방!"이라고 외칠 필요가 없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양심수를 석방한 후에, 국민의 정부, 민주주의를 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악법의 개혁없이, 민주화와 개혁을 말하지 말라.'

<참고자료 2-1>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우리는 왜 준법서약을 거부하는가

김대중 정부는 금번 8.15를 맞이하여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을 통해 양심수를 대폭 사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15를 계기로 양심수의 완전 석방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금번 8.15 사면의 당사자로서 정부가 내건 준법서약을 새로운 파쇼공안통치의 연장음모로 보고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정부가 준법서약의 취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법 질서를 위반한 적이 없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은 외세에 저항하고 외세에 빌붙어 민중의 생존권과 민족적 기본권을 유린했던 특권 기득권, 집권층에 반대하여 싸웠던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뼈를 묻을 우리의 조국을 부정한 바 없다. 또한 우리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법질서를 부인한 바 없다. 우리가 거부했던 것은 외세의 침탈을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여 싸우는 청년학생과 민중의 투쟁을 탄압했던 파쇼독재악법과 그 체제이다.

우리는 감히 어느 누구보다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선혈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질서를 수호할 각오와 의지가 있음을 자부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라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가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법을 준수하라」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웠던 선배영령들과 그 길에서 청운의 꿈을 버려야 했던 수많은 민주인사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문서를 강요하며 양심수 석방을 마치 은전이나 베푸는 듯이 떠들어대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족민주진영을 고립 분열 압살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정치음모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는 개혁이니 민주주의니 떠들어대면서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고 안기부 보안수사대 등의 파쇼통치기구를 온존시키고 있다. 8.15 대규모 사면을 운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미 2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김대중 정부 들어 양산되었으며, 전국의 학원과 노동 현장은 경찰과 공안수사 요원들에 의해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준법서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내밀고 있는 것은 실추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양심수 석방을 들러리로 활용하는 대신 새로이 준법이라는 틀을 통해 민족민주세력을 자신의 구도내로 포섭하는 한편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탄압을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

김대중 정부가 진심으로 양심수 석방의 의지가 있다면 양심수 사면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 연행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김대중 정부가 참으로 민주질서 확립의 뜻이 있다면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이니 민주주의니 운운하는 것은 대외

치장용 요식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준법서약을 둘러싼 논쟁이 사이비 민주주의를 척결하고 참신한 새정치 새사회를 열어가는 첨예한 정치 문제로 판단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웠던 우리의 신념과 의지의 연장선하에서 김대중 정부의 준법서약을 통한 파쇼공안통치 합법화 기도를 저지, 파탄시켜 내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준법서약을 거부한다.

우리는 지난 기간 보수정치권에 대한 헛된 기대와 어중간한 타협적 태도가 어떻게 짓밟히고 농락되는가를 뼈저리게 알았다. 자주 민주 통일,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참신한 새사회 건설은 오직 우리 자신의 투쟁 속에서만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금번 준법서약 거부 투쟁과정에서 청춘을 옥에서 보낸 17명의 장기수들과 나이어린 청년학생들 그리고 많은 노동자 및 재야인사들이 종이쪽지 한 장과 수년, 수십년의 감옥생활을 맞바꾸지 않는 모습에 가슴 뜨거운 동지적 연대와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어도 당신들의 의지가 우리와 하나님을 한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 벅찬 감동과 동지적 믿음을 가슴에 안고 민족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8월 3일

우리는 왜 준법서약을 거부하는가

1.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이를 합법화하는 파쇼독재체제에 저항해 싸웠을 뿐 준법서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국법을 어긴 일이 없다.
2. 김대중 정부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뜻이 있다면 현재 무차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3. 우리는 금번 준법 서약제를 새로운 차원의 파쇼공안통치 음모로 규정하며 김대중 정부에 맞서 민주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시> 종이 쪽지 한 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대로 적으란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종이쪽지 한 장이

학생들을 구속하는 사유가 되고 이적 단체 양산의 도구가 되고

범대회를 봉쇄하는 무기가 된다면

나는 3년 6월과

종이쪽지 한장을 바꿀 수 없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는대로 적으란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종이쪽지 한 장이

전향제의 변종인 한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단 1%라도 남아 있는 한

나는 3년 6월과 종이 쪽지 한장을 바꿀 수 없다.

종이쪽지 한 장에 사이비와 참 민주를 가르는 기준이 들어있는 한
종이 쪽지 한 장에

매국노를 단죄하는 철퇴가 숨어 있는 한

종이쪽지 한 장에

투쟁하는 민중의 숨결이 묻어나는 한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왜 준법서약을 거부하는가

50년만의 정권교체, 정부독립 50돐이라고 양심수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공공연히 이야기 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그 자신이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의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이었으며 양심수였다는 사실이 인권정책과 사회 민주화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현 정권의 허구적 민주주의론을 아직은 지탱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

허나 우리는 지난 수개월 김대중 정권의 행보와 지금의 사면 정국을 보면서 이 허울은 걸릴 것이요, 아니 그 민주주의 구호의 허구가 이미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우리는 현시기 거론되는 사면의 당사자로서 지금의 사면 논의와 준법서약에 대한 우리의 견해,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양심수에 대한 현 정권의 인식과 그에 따른 지금시기 사면 논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땅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사상과 양심의 초보적 권리마저 철저히 군화와 곤봉아래 짓밟혔고 참민주사회 새사회 통일 조국을 외쳤던 애국자들이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독재의 법제도, 기구에 의해 감시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때로는 죽어갔다.

이땅의 민주화의 노정, 통일로의 걸음걸음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체의 압제와 굴종을 거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워온 정치범들의 걸음걸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기에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권이라면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 제도와 기구를 철거시키고 모든 양심수들은 억압과 구속에서 풀려나야 한다.

이처럼 양심수 문제는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없는데도 역대정권은 철저히 이를 외면, 왜곡해 왔으며 그 독재체제하에서 더 많은 양심수를 양산해 왔다. 우리는 정권교체 후 들어선 국민의 정부에서도 양심수에 대한 이런 정략적, 반 민주적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준법서약을 중심으로 한 현시기 사면 흐름속에서 직시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분단체제와 독재권력에 맞서 싸워오다가 부당하게 갇혀있는 양심수에게 써야 될 이유도 없는 서약을 강요하면서 온전을 베푸는 듯한 현정권의 사면놀음은 역대독재정권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다음으로 우리는 준법서약의 제기배경과 그 본질에 주목한다. 먼저 사상전향제는 이미 그 여력이 다한 구시대적 제도였으며 어떤 형태로든 개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는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주요하게는 전향을 강요하는 독재의 폭력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웠던 장기수 선생님들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견결한 투쟁으로 가능했다. 하기에 이땅에서 제운명을 다한 사상, 양심, 정치적 권리에 대한 억압의 사슬과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통치의 도구는 새옷으로 치장할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준법서약이다. 이는 준법서약이라는 새로운 도구는 그 치장과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고 민주와 반민주, 애국과 매국의 역관계에서 민주와 통일, 애국세

력에 대한 공안탄압과 책동이 계속되는 이땅의 현실속에서 본질적으로 또 다른 공안의 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준법서약을 민주주의의 진전의 의미를 갖는 「획기적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심하며 이 제도를 준비해 왔다는 법무부 당국자의 말이나 준법서약에 대한 DJ의 의지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공안통치로서의 「획기적 정책」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준법서약을 비롯한 준법의 잣대는 운동세력을 자신의 구도하에 참여와 투쟁포기로 포괄하면서 이를 벗어나는 애국적, 변혁적 세력에게는 불법의 망을 씌워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언제든지 억압할 수 있는 집시법,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 등의 독재적 법, 제도를 비롯하여 국정원, 보수대 등의 폭압기구를 온존시키면서 합법과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본질을 엿볼 수 있으며 애국단체에 대해 이적과 불법의 칼날을 씌우고 광폭하게 탄압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간 DJ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생존권적인 투쟁조차 적법은 수용하되 불법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탄압과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노사정이라는 자신의 구도하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그 전투성을 꺾으려 하고 있다.

허나 이는 기층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단결된 투쟁으로 패탄나고 있으며 그 본질은 깨발려지고 투쟁의 파고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청년학생의 자주적 조직, 애국적 대중조직에는 독재적인 이적규정으로 유례없는 탄압의 용단폭격을 3년째 가하고 있으며 신성한 학원이 군화발과 곤봉으로 유린당한 횟수는 셀 수가 없다. 실지로 국민의 정부 들어 지난 5개월간 수백명이 구속되었으며 조작사건은 계속되고 폭압기구는 강화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창구단일화, 합법의 논리로 범민련 등의 통일 세력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민족적 단결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력을 위주로 한 운동세력에 대한 말살, 분열, 자신의 구도로의 참여라는 개량화 책동의 신공안통치 연장선상에서 끊어오르는 양심수 석방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를 무마하고 민주적 개혁인양 치장하기 위해 이미 제 운명을 다한 사상전향을 폐지하고 준법서약 이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제기된 것이다. 그 본질과 의도가 양심수 석방과 민주화를 위함에 있지 아니하고 신공안통치의 고도화와 세련됨에 있기에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변혁운동의 결집들이 되는 것이다. 즉 공안통치의 합법화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양심수에 대한 준법서약 조처에서 이후에 애국적, 변혁적인 단체에 불법의 칼날을 씌우고 진행될 광폭한 탄압과 전체 운동에 대한 분열책동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략 세 가지의 이유로 준법서약을 거부한다.

첫째, 준법서약은 사상전향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인간은 준법의지를 서약으로서 표현하기를 강제당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더구나 양심수에 대해서 그것도 사면의 조건으로 내민 것은 중대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다.

즉, 준법의지를 천명하라는 준법서약은 모진 고문과 회유로 종이에 글쓰기를 강요했던 사상전향제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면에서 그 내재적 연관을

서로 갖는다.

둘째, 양심수에게는 준법을 강제당하고 준법의지를 천명해야 할 어떤 정치적 이유도 없다. 양심수 정치범은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비민주적 제도와 독재 권력에 의해 갇혀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운명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 정당히 싸워온 사람들이 그 전부이다. 준법서약의 내용에 있어서 대한 민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요구는 부정부폐, 쿠데타, 민중학살을 자행한 전직대통령과 독재세력에게나 요구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애국의 일념으로 매 국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 위해 싸워온 양심수에게는 부당하다. 이땅의 양심수 정치범은 내나라와 내조국, 민중을 위해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지 헌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적도 조국을 배반하고 매국의 길에 들어선 적도 없다. 헌데도 악법과 독재의 부당한 불법의 족쇄와 매도에 의해 간힘으로써 마땅히 풀려나야할 사람들에게, 준법을 표방할 어떤 정치적 이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준법각서를 내미는 것은 과거 자신의 정당한 행위를 자기부정하라는 것이며 모욕이다.

세번째, 현시기 준법서약을 사상, 양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서 말했듯 이 제도를 신공안통치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제도라는 관점이 명확할 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폭력성과 비민주성도 명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법과 폭압기구가 혼존하고 정치사상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지금시기, 운동세력에 대한 분할과 지배구도로서 작용하고 애국세력에 대한 물리적 탄압의 근거가 될 준법의 논리로서의 준법서약을 단호히 거부한다. DJ정권이 정녕 민주주의를 지표로 삼는 정권이고 양심수 석방에 대한 아무런 정략적 계산이 없다면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보안수사대와 국가정보원 해체, 자신이 구속한 미결 양심수의 석방 등의 민주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허나 그럴 수 없고 현 정권하 반민주적 행태는 강화되기에 지금 DJ가 외치는 민주주의와 양심수 석방은 허구이며 준법서약은 신공안정책의 획기적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불법이적의 굴레로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각계각층의 요구와 투쟁을 억눌러 왔던 현정권의 수개월의 현실속에서 우리는 준법서약의 정치적 의도를 확인하고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분쇄하는 정치적 투쟁으로서 준법서약을 단호히 물리친다.

글을 마치며, 얼마전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낸 준법서약철회, 애국단체 이적규정철회, 수배해제 등의 민주적 요구를 보면서 가슴 뜨거운 애정과 감동, 연대의 마음을 갖는다. 또한 장기수선생님들을 비롯해 검사와 싸우며 수년의 청운의 시간과 그 고결함을 종이 조각으로 대신하지 않은 청년학생들, 양심수들에게 비록 몸은 떨어졌으나 뜨거운 동지적 애정과 경의, 연대의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금명의 8.15 사면 정국은 나가고 안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비민주성과 공안통치의 의도를 폭로, 분쇄하고 더욱더 각계각층이 광범하게 연대 단결하여 총체적인 민주화 투쟁으로 -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국정원 보안수사대 해체! 양심수 전원 석방! 노동권 민중생존권 보장! - 나아가는 데 그 정치적 핵심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지금시기 민중을 억압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애국적 진출을 가로막는 독재의 정후들을 바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의 전선으로 노동자, 학생, 시회단체등 각계각층 애국세력들이 연대/단결/투쟁하기를 가슴 절절히 호소한다. 이는 옥담을 허무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투쟁과 사회변혁의 진전만이 감옥문을 진정으로 열 수 있으며 우리 형제 가족들이 온전히 얼싸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의 지난한 정치범들의 원칙과 정도를 가는 비타협적 투쟁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기둥이고, 독재 세력의 심장부에서의 위력적 무기였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현시기 제2의 문민독재정권으로서 그 반민주적 본질을 드러내는 DJ정권을 규탄하며, 새정치 새사회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이 외면당하고 짓밟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준법서약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사상, 양심의 자유침해, 반 민주적 공안통치에 그 본질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중의 진출을 억압하는 일체의 악법과 폭압기구가 철거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최전선에서 정치범의 자존높이 견결히 싸워나갈 것이다.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쓰는 이유

사랑하는 어머니!

교도소 담벼락에 붙은 석방자 명단에 제 이름 없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을 어머니, 8.15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의 환영인파 속에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 심정이 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외로웠을 어머니,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홀로 면회실로 힘겹게 걸어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창을 사이에 두고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면회 내내 울고 계셨던 어머니, 13년 감옥살이 그 술한 면회가 있었지만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당신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저를 걱정하며 천리길을 달려오셨는데 30분의 짧은 면회를 마치고 다시 그 먼 서울까지 가시는 길에 오전처럼 억수같이 비는 퍼붓지 않았는지요.

아까 면회실에서 못다한 얘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편을 들었습니다.

준법서약제도가 발표된 지난 7월 초순, 당신께서 조심스럽게 "준법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지요. 그 때 저는 그저 "어머니, 오래 오래 사셔야 해요"라고 밖에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말 없으시더니 오늘에서야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고 하셨지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어머니를 뵈면서 저를 야단치시고 혼을 내시는 게 제 마음이 덜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13년 전 어머니와 했던 첫 면회가 생각납니다. "전향을 해라. 전향을 하면 나온다더라" 하셨을 때 이 불효자식은 "그런 말 하실려면 다시는 면회도 오지 마세요"하고 면회실을 뛰쳐나갔지요. 그 후로 당신은 전향하란 말, 입 밖에도 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전향제도가 두려웠습니다. 86년 무기형으로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15사로 이감갔을 때 전향하지 않는다고 30년, 40년 감옥살이 하던 장기수 할아버지들, 산송장과 같은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전향하지 않으면 나 역시 저렇게 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암에 걸린 장기수 한 분이 비전향수라는 이유로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이 억울한 감옥살이, 전향제도 없어지는 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전향제도 폐지하라고 단식했던 날을 세어보니 200일이 넘었더군요. 저는 저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맬 때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당신도 끼니를 거르며 지내셨던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지난 5월 19일 20일간의 단식을 끝내며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단식투쟁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2년여 동안 준비했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개인통보권 행사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에 전향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한 것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사상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특히 유엔 인권위에서의 폐지권고가 수차례 있었기에 저의 제소가 승리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7월 1일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한다며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법서약은 또 무슨 소리인가, 이 무슨 해괴망칙한 발상인가,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물론 전향제도 폐지결정은 이를 위해 노력한 유엔인권위와 국내의 인권운동가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 대열에 함께 있었기에 우리들 노력의 맷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못할 망정 준법서약이라니....

그동안 준법서약 문제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인권단체 관계자들, 양심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가협 어머니들은 혹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반대운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서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죄짓고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는데 서약서는 최소한의 요구"라든가, "분단상황에서 보수세력의 반발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든가, 서약서는 "안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모두 내보내려고 만든 것"이라든가, "전향제도와 서약서는 다르다"든가 등등.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준법서약제도는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상전향을 거부했던 것은 바로 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이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지요. 그러나 서약제도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준법서약을 거부한다고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70년 전 미국 흥즈 판사의 말이나 "100% 올바른 진리라고 하더라도 죽어버린 독단이 아니라 생생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론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아무리 잘못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한 J.S.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사상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배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는 서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듯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규율은 옳든 그르든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체제라는 흑백논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준법서약제도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율배반인 아닌가 합니다.

서약서를 쓰면 나갈 수 있고 어머니 고통도 끝날 수 있을텐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약서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소로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천성이 강제를 당하게 되어있지 않다. 나는 나대로 숨을 쉴 것이다..... 저들은 나를 자기들과 같이 되라고 강요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강요당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는 않는다. 어떤 종류의 삶이 살아야 할 삶이었던

가."

왜 준법서약서를 쓸 수 없는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있는 편이 제 '양심의 법정'에서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떠드는 무지하고 야만스런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천박함이 횡행하는 땅에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오척 담 안일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법 지키겠다고 쓰고 나와서 또 활동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할 이도 있겠지요.

어머니, 어쩌면 저는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80년 5월 26일 저녁 계엄군이 진입해 오던 순간총을 들고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도 빠져 나올 판에 죽을지도 모르는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들어가 어머니 속을 무던히도 썩혔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앞날이 보장되는 의사되기를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재판 받을 때는 검사가 사실인정만 하면 낫은 형을 주겠다는 희유를 거부하여 사형구형을 받고, 무기형이 확정되고 나서는 전향서 대신 생활계획서나 각서를 쓰면 사면시켜주겠다고 했어도 거절한 바보잖아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저이지만 93년에 전향 안하고도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적도 있으니 그것이라도 어머니께 위로가 될까요.

제 만기일인 2006년 9월 22일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일흔 셋의 당신을 생각하면 아려오는 아픈 가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제발.

98년 8월 15일

안동에서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용주 올림

<참고자료 3> 한총련 수배자의 아버지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학생들은 가장 맑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김종맹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대표

저는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은평교회의 담임목사 김종맹입니다. 한평생을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신장과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오신 대통령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 어리며 더욱 존경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당돌하게 또한 용기를 내서 감히 대통령님께 이같은 글월을 올리게 되는 것은 작금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총련의 문제와 관련해서 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사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부족한 저의 소견과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상식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총련 대의원들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선출한 정, 부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연합회장 등 각 대학교의 학생회를 대표하는 학생회의 간부들입니다.

이같이 귀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구속하고 학생연합운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으로 공산주의자로 이적행위자로 몰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십년 동안 옥고와 감금과 정치활동 규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피해와 억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친 탄압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지금 한총련 대의원들은 잡히면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범법자 취급을 당하고 쫓기고 있으며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지명수배를 받고 숨죽이듯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수명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몇 달째 집에 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잠도 마음놓고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경, 경기도경, 오산경찰서, 의정부 경찰서에서 한총련을 탈퇴시키라고 하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형사가 저의 집을 다녀가곤 합니다.

또한 수원지검 검찰청 검사장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의로 6월 10일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법조항을 명시하여 한총련 대의원 학부모들에게 위협적인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상황下에서 겁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간다는데 불안에 떨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한총련을 탈퇴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억압과 공포분위기에서 탈퇴하는 것은 진정한 탈퇴가 아니며 또한 정당한 방법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선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마다 의로운 병기로 쓰임을 받아 왔습니다.

과거 학병동맹 결성, 국대안 반대, 신탁통치 반대, 단선단정 반대,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 5.18 광주 항쟁, 6.10 민중항쟁 등등 학생운동은 항상 외세, 독재와 싸우며 민주주의 건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이땅 위에 이만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도 학생들의 희생과 노력이 그 누구보다 컼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대통령께서 술한 고난을 받으실 때도 학생들은 동지로서 함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으며 함께 고난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대통령께서 후보로 나오셨을 때 한총련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투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물론 한편으로는 한총련이 급진적인 면이 있어서 우려되는 바도 있고 또한 반성하고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것처럼 이런 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큰 어버이의 사랑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학생들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자신감과 자격이 있으시며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감히 대통령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사법적으로만 다스리고 조치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부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하는 부당함을 철회하여 주시고 구속된 학생들과 양심수들을 하루 속히 석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총련이 보다 더 건전한 학생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짚어진 젊은이들의 기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분명코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고 반정부세력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의 확실한 지지기반이 될 것이며 학생들과 온 국민들은 더욱더 대통령을 높이 추앙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8년 8월 목사 김종맹 올림

(월간 사회평론길 98년 9월호)

<참고자료 4>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의장님, 김양무상임부의장님, 곽병준고문님, 김한덕감사님, 민자통 김재봉의장님과 500명의 한총련 불법연행자를 석방하고 김대중 정권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합의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9차 범민족대회]를 판문점에서 성대히 성사시키자는 조국과 민족의 요구를 광폭한 탄압으로 짓밟고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님과 의장단, 노동자, 청년, 청년학생 등의 수백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였다.

폭력경찰의 극악무도한 탄압은 마침내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의장님과 그의 의장님들을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500여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며 연행되었다. 외세와 반통일세력에 의해 갈라진 조국과 민족을 하나로 잊고자 통일운동에 나선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 등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김대중정권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민족분열과 조국분단으로 인한 온 민족의 고통과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을 극악무도하게 탄압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통일애국인사들을 연행한 김대중정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아닌 민족분열과 조국분단을 부추기며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반통일정권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또한 통일운동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전향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준법서약서라는 기만적인 행위로 양심수를 우롱하며 대규모 울산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을 광폭하게 탄압하면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인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죄가 되어야하는 참혹한 현실앞에 지금 온 겨레는 치열리는 분노와 경악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허울좋은 국민의 정부가 조국통일의 구심 범민련과 애국애족의 결심 한총련을 향하여 탄압하는 것은 역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9차 범민족대회]를 서울과 판문점에서 성대히 성사시킨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통일애국진영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하면서 연방통일조국건설의 그날까지 굴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강희남의장님과 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

반민족, 반통일 김대중정권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1998년 8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고자료 5>

구속적부심사청구

청구인 구속된 피의자 강희남
 곽병준
 김양무
 이현수
 문재룡의 변호인8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서울지방법원

귀중

구속적부심사청구

청구인 구속된 피의자 강희남, 곽병준, 김양무,
 이현수, 문재룡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서울영등포구 문래동4가 7의 6 문래빌딩

3층

(피의자들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청구취지

1. 구속된 피의자들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구속된 피의자들은 모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남측본부 구성원들로서 강희남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장, 곽병준은 고문, 김양무는 상임부의장, 이현수는 고문, 문재룡은 제9차범민족대회 서울 추진본부장입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8·15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차 범민족대회에 참석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수천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대회를 평화적으로 무사히 치르고 각자 귀가(歸嫁)하려는데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무장경찰병력이 학교를 포위하고 귀가를 막고 참석자들을 체포하려고 하므로 피의자 강희남, 곽병준, 김양무, 이현수는 8. 16. 오후 4시 반경에 경찰들에게 가서 대회는 평화적으로 마쳤으며 학생들이 조용히 집에 가도록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으니 포위망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자, 경찰은 그 자리에서 위 피의자들을 체포 연행하였고, 피의자 문재룡은 대회 참석 후 집에 돌아왔었는데 8. 17.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나갔다가 체포 연행되었습니다.

그후 피의자들은 밤에는 종로경찰서(강희남), 마포경찰서(곽병준), 남대문경찰서(김양무), 동대문경찰서(이현수), 중부경찰서(문재룡) 유치장에 분산 수감되었고 낮에는 종로 육인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1대에 연행되어 가서 조사를 받다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현

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 피의자들이 석방되어야 할 이유

(1)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왜 구속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을 구속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열람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을 구속한 경찰은 변호인의 열람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8. 20. 오후 3시경 피의자들을 접견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복사까지 요구한 것은 영장의 부피가 대단히 두껍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들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서울지방검찰청 박준효 검사로부터 영장을 보여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열람 및 복사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박준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더니 박검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 수사단계에서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하는 수 없이 구속영장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처사는 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설령 적법하게 구속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거부한 그 순간부터 불법구속이 시작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비밀결사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통일운동단체입니다. 피의자들은 7천만 거례의 복리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만약 자기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저촉된다면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처벌이 두려워 도망다니거나 증거를 없앤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피의자 강희남, 곽병준, 이현수는 80이 가까운 고령인데다 지병(持病)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확정판결을 거쳐서 형을 살려도 될 것을 구속부터 집행하였다든 것은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신병(身柄)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권력이 강제수사권을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정하고 신성해야 할 사법이 여기에 이용당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국가보안법은 위헌 무효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입법배경이나 그 동안의 법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는 바로 북한정권과 그에 추종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세기 하고도 3년이 더 지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부끄럽고도 참담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숙원이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87년에 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평화적 통일은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그 대화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자주적 대화여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대화는 남과 북이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강대국에 의하여 강제로 분단된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형제라는 민족적 자각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렇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놓고 남북단절을 강요하고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의 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간 냉전시대에 북진통일을 외치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72년 한반도 평화적 통일의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3대원칙을 선언한 남북간의 「7·4 공동성명」, 1991. 9. 17.에 실현된 남북간의 국제연합 동시 가입, 1991. 12. 13. 남북한 총리사이에 서명되고 1992. 2. 19. 발효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과는 양립할 수 없는 법률이어서 마땅히 폐기처분되어야 할 법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권리가 더 누려온 사람들이나 친미분단주의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수호에만 연연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을 고수하면서 이를 통일운동의 탄압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7천만 대다수 민족의 염원과 이익을 짓밟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비록 아직은 살아 있는 실정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반민족적, 반역사적 위헌법률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4)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어떠한 단체의 성격을 알려면 강령, 규약을 보아야 합니다. 범민련 강령은 이렇습니다.

[제1조]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들을 존중하며 그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는다.

[제2조] 남과 북(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북과 남)에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제3조] 우리 민족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조국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남과 북(북과 남)의 상호군축을 실현하며 한(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화 한다.

[제4조] 동족 사이에 대결과 반목을 보장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온거제의 자유로운 내왕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남과 북(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 협력을 실현한다.

[제5조] 전민족적 통일의지를 집약하기 위하여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의

마당을 마련한다.

[제6조]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족 역량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으로 굳게 결집시키며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제7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평화옹호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 발전시킨다.

이러한 경영에서 보듯이 범민련은 남 또는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타방을 해치는 편파적 단체가 아니라 남북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애족단체입니다.

범민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 사회단체, 개인 및 당국을 망라하여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의 사상, 이념, 정견, 신앙의 차이를 존중하여 함께 참여하는 거족적 공동기구입니다. 우국충정에서 결성된 이러한 통일운동단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이북정권을 이롭게 하는)로 몰아 처벌한다는 것은 지나친 반민족적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맑스주의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실현하자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7·4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입가하여 통일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북에만 이롭고 대한민국에는 해롭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7천만 민족이고 해를 입는 곳이 있다면 미국 밖에는 없습니다. 외국군대의 철수가 실현되면 미국은 항공모함 수십대보다도 유리한 그들의 극동 군사기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사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미국의 사주,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는 것인데 검찰의 공안논리에 이끌려 실체관계를 규명하지도 아니하고 주관(主觀)없는 판결을 하였다고 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혹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것이 아닌가 싶어 국가보안법의 위헌론과 범민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것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피의자들을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8. 27.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자료 6>

시대의 양심, 민족통일의 큰별 문규현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김대중 정권은 8월 27일 이 시대의 양심이자 민족통일의 큰별인 문규현 신부를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작태로서 민족통일을 갈망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문규현 신부는 이번 방북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친 방북을 통해 남북간에 화해를 이루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89년의 두 번째 방북에서는 당시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던 임수경 양을 동반하고 노태우 군사정권에 맞서 당당히 판문점을 통해 귀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를 세계 만방에 과시한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통일의 상징적 존재인 문규현 신부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은 세계 각국의 조소거리이자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공안당국이 내세운 구속 사유라는 것은 그 정당성을 추호도 찾아볼 수 없는 구태의연한 것으로서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권의 반시대적 편협성을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

먼저 공안당국은 문 신부가 주석궁을 방문하여 고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기원했다는 것을 혐의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그 객관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결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성경 말씀의 궁극적 내용의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생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생전의 원수와도 죽어서는 화해하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 신부가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빌었다고 해도 이는 성경 말씀과 민족적 미덕에 따라 사제의 양심으로 행한 것으로 결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안당국은 또한 문 신부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통일대축전(북측)에 참가했다는 것을 혐의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 전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일대축전은 지난 6월 북한의 제안을 남한 당국이 받아들여 남·북·해외 동포들이 함께 치르기로 한 행사다. 비록 범민련, 한총련 참가 문제 등을 이유로 통일대축전이 남과 북에서 따로 치러졌지만, 이 행사가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애초에 이 행사를 함께 치르자고 받아들였던 정부 당국부터 먼저 사법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애초에 함께 하기로 한 행사가 지역을 달리해서 치러졌다고 해서 이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현정권의 이중성과 독단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와 같이 문 신부를 구속한 공안당국의 처사는 전적으로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정부는 즉각 문 신부를 석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현정부가 시대의 요구, 민족의 염원,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통일의 화신 문규현 신부를 민족의 품안으로 돌려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998년 8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 기세준, 신법타, 임종철, 홍근수(상임)

<참고자료 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뿐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다" (루가 10:33-34)

지난 8월 27일 문규현 신부의 구속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위 국민의 정부가 '대북화해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이나 종교단체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대를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는 발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이었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방북은 종교 교류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제안에 대해 김대중정부가 과감히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기에 통일대축전과 관련하여 남과 북의

정권에서 발생한 미묘한 기류를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서 새로운 통일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길 바랬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와 염려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함께 동행한 사제에 의하면 문규현 신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하느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감수하고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남한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과 북측의 통일정책에 대한 질타 그리고 겨례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9월 1일자, 「기쁨과 희망」 함세웅 신부의 글 중에서) 이것은 오직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고행의 길을 걸어온 문규현 신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이는 김대중정부에 대해서도 이로운 일이었고 그러기에 과거정권들이 방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귀국하자마자 구속했던 사례와는 다르게 이번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허탈감과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안기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이번 구속사건은 IMF의 실업사태와 정리해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돌려세우려는 일부 수구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사건은 소위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물꼬를 트려는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의 입장에서도 반기를 드는 문제이기에 이번 구속사건은 부당한 것이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 사제에게 중거인멸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제직에 대한 직분뿐만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해왔던 한 인간에 대한 모욕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과

거정권이 해왔던 구태의연한 분열공작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규현 신부가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이 남북의 종교문화교류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행위이고, 구속이라는 폭력적 해결방식이 김대중정부 자신에게 어떠한 해가 돌아갈지 그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을 경고하며 이후에 빚어지는 사태에 대한 범종교인차원에서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998년 8월 2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가톨릭노동청년전국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공동선, 빛두레신앙인학교, 우리신학연구소,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천정연광주연합, 천정연목포연합, 천정연부산연합, 천정연상주연합, 천정연전주교우회,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인천청년연대, 천주교장기수후원회, 천주교청년공동체

<참고자료 8> 정치수배, 해제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물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밀려오는 차가운 기운이 이제 가을이 멀지 않음을 직감케 합니다. 다가을 추석을 생각하니 희망과 답답함이 여러 갈래로 교차합니다. 오랫 만에 성묘를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적막한 도시에 미아로 남아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

정권 교체의 기쁨은 단 하루 뿐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권도 출범초기에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준법서약서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으며 310명에 달하는 시국사범들의 수배해제 조치까지 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 정부가 아직도 양심수를 감옥에 가둬놓고 수배자들을 쫓고 있으니 배신감마저 듭니다.

첫째,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해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다가 억울하게 투옥된 양심수들은 1년에서 40년을 가두어 두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입니다. 세계 3대 인권운동가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들에게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처사입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를 그들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풀려난 마당에 양심수와 수배자들이 아직도 범법자로 남아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거대한 부정 부패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은 사면, 복권까지 시켜놓고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운동가들에게 아직도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셋째, 이제는 국민들의 친임을 잊어버린 김영삼 정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144명의 양심수를 준법서약서 없이 석방하고 310여명의 구정권 시절 정치수배자들에게 불구속 수사에 기소유예라는 수배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욱 개혁적이어야 할 김대중 정부가 이토록 과거청산에 주춤거리고 비리 권력자들만 두둔하는 것은 오랫동안 '김대중'을 믿고 싸워왔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치수배 해제 조례사 농성단의 요구사항

1. 김영삼 정권 시절에 양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2.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대 문제 해결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강위원, 정명기, 정태홍 한총련 전임 의장을 비롯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의 조건 없는 사면과 석방을 요구합니다.
4.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은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6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6기 대의원 검거는 초법적인 인권탄압이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5.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새시대에 맞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례사 농성단(단장 오창규)